



미국·EU의 재보험 협상 결과와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2016년부터 재보험 등 재무건전성 보험감독에 대한 협상을 하여 온 미국과 EU는 2017년 9월 커버드협정(Covered Agreement)을 체결하였음. 2018년 10월 현재 양국은 협정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5년 이내에 해외 수재사의 100%담보요건(미국), 현지설립요건(EU)을 폐지하고 그룹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상호 인정해야 함. 미국은 협정에 따른 재보험담보요건 철폐를 모델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공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재보험에 대한 역외거래가 가능하도록 상호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업계는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방향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내 보험회사의 미국 수재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6년부터 보험규제감독 협상(EU-US Dialogue Project)를 추진하여 온 미국과 EU는 2017년 1월에 합의하고 9월에 커버드협정(Covered Agreement¹⁾)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이와 관련한 법규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3가지임
 - 첫째, 재보험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및 EU재보험회사에 대한 담보 및 현지존재요건(Collateral And Local Presence Requirement)을 상호 폐지함
 - 미국은 5년 이내에 재보험담보요건(Reinsurers Maintaining Trust Fund)을 폐지하고, EU는 24개월 이내에 재보험사의 현지존재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 둘째, 보험그룹의 재무건전성은 미국과 EU의 지급여력기준²⁾에 의하여 감독받는 것으로 하였음
 - 셋째, 미국과 EU의 보험감독기관은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감독의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1) 본 협정의 제목은 “B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Prudential Measures Regarding Insurance and Reinsurance”임. [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https://www.treasury.gov/initiatives/fio/reports-and-notice/Documents/Covered-Agreement-Fact-Sheet-(011317)-FINAL.PDF)

2) 김해식·임준환(2017. 4. 3), 「EU 보험시장 진입의 열쇠, Solvency II 동등성 인정 제도」, 『KiRi 리포트』, 제416호, 보험연구원 참조

■ 미국과 EU는 이번에 체결된 커버드협정에 대한 실행을 확약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음³⁾

- 미국은 EU가 그룹감독과 재보험회사의 현지존재요건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보험담보요건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이 재보험담보요건을 폐지하지 않으면 EU도 관련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향후 5년 이후 동 협정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음

■ 미국은 커버드협정 내용 중 재보험담보요건 폐지 이행을 위하여 재보험모델법과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이전에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소재하는 주(州) 이외로 출재를 하는 경우 다른 주에 소재하는 재보험회사 또는 신탁계정을 유지하고 있는 재보험회사(수재금액에 상응하는 100% 담보 제공)에게 출재하는 경우에만 재보험(Accredited Reinsurer)으로 인정하였음
-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이하 'NAIC'이라 함)는 유럽과 일본 등 국가의 규제완화 요구 등에 따라 2011년 재보험모델법(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을 개정하였음
 - 이로 인해 NAIC가 공표한 인정관할국가(Qualified Jurisdiction)⁴⁾에서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개별심사를 통과한 보험회사(Certified Reinsurer)는 신용도에 따라 100% 보다 적은 담보 제공⁵⁾이 가능하게 되었음
- 2018년 10월 현재 NAIC는 커버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NAIC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공공의 의견을 받아 보완하였으며, 9월 25일 개정초안⁶⁾을 공개하여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커버드협정의 재보험담보철폐와 관련하여 상호관할구역(Reciprocal Jurisdiction, 이하 'RJ'이라 함)⁷⁾과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 출재계약 중 중 담보요건이 불필요한 것은 재보험회사가 RJ에 소재하고 일정요건(최저자본금, 지급능력요건, 보고요건, 재보험금의 신속한 지불이행 등)을 만족한 경우로 한정함

3) 中村 亮一(2018. 10. 8), "EUと米国の間の再保険規制を巡る動きについて - カバード・アグリーメント署名後のNAICにおける検討状況 -",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 2

4) 2017년 현재 인정관할국가는 버뮤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영국으로 2017년 1월부터 5년간 유효함: NAIC(2017), "NAIC List of Qualified Jurisdictions As of January 1"

5) 미국 이외의 해외 재보험회사는 일정 자본요건이나 보고요건을 만족하면 재보험담보의 감액(신용등급에 따라 0%, 10%, 20%, 50%, 75%, 100%)이 인정됨.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재보험회사의 관할구역이 인정관할국가(Qualified Jurisdiction: QJ)에 해당해야 하며, 해외 재보험회사가 해당 주 보험청에 신청하고 신용리스크 심사를 거쳐 재보험담보금액 적용에 대한 적정성을 인증 받아야 함(Certified Reinsurer), https://www.sidley.com/files/upload/2012_IRLR_NAIC_REFORM.pdf

6)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law.pdf?3

https://www.naic.org/documents/cmte_e_reinsurance_180925_model_regulation.pdf?71

7) ① 미국과 조약 또는 국제협정 (포괄계약 등을 상정)을 맺은 비미국관할구역 및 ② 일정의 추가요건(미국의 재보험회사에게 담보요건, 지급설치요건을 없고, 미국의 본사가 있는 보험그룹은 해당 지역의 그룹감독에 적용받지 않을 것)에 충족해야 해야 함. NAIC, *Model#785 Draft 6-21-2018: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pp. 785-8~785-11

■ 미국은 국내 보험회사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⁸⁾에 의거 비대면방식에 의한 재보험의 역외거래(Cross Border Transaction)을 허용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수재를 위해 역외거래 또는 지점을 통해 수재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재보험모델법상의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동 규제는 미국외의 수재보험회사에게 차별적인 규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뉴욕주, 플로리다주는 다른 주 또는 해외 보험회사가 우량한 신용등급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 감액제도를 2010년, 2008년에 각각 도입하였음
- 이에 비해 미국의 보험회사는 국내 보험계약을 수재하는 경우에 역외거래를 통해 가능하며 재보험담보 제공이 불필요함
 - 국내 감독당국은 2005년에 「보험회사의 재보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 자율적인 재보험관리로 전환되었으며 미국과 같이 수재사의 100% 담보는 불필요함

■ 우리나라의 재보험시장 규모는 2017년 현재 22조 3,859억 원으로 연평균 12.5% 성장하고 있음

- 이중 출재보험료는 12조 1,068억 원, 수재보험료는 10조 2,791억 원으로 매년 12%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우량한 해외물건에 대한 수재확대는 포화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경영전략으로 기능할 것임

〈표 1〉 우리나라 재보험료 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CAGR
수재보험료	63,471	85,207	91,541	95,104	102,791	12.8
출재보험료	76,066	102,352	108,740	111,972	121,068	12.3
총재보험료	139,537	187,559	200,281	207,076	223,859	12.5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5. 21), “2017년 재보험시장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우량물건 수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재보험모델법의 개정내용과 진행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커버드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상호관할국가(Reciprocal Jurisdiction)”에 대한 범위와 적용조건이 한미자유무역협정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국내보험회사의 수재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이기형(2011. 12.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험분야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전략」, 『주간포커스』, 제159호, 보험연구원

- 일본 보험업계는 미국의 수재 확대를 통한 해외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보험모델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정안의 영향과 이에 대한 의견을 NAIC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kiri**

9) 일본 손해보험협회의 “米国再保険監督規制に関する動向”(http://www.sonpo.or.jp/efforts/international/regulations/usa/qj.html)에 따르면, 일본 보험업계는 2012년부터 재보험의 100% 담보요건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8년 9월에 공표된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에 세부의견을 NAIC에 제출하여 대응하고 있음